##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맹성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50

발의연월일: 2022. 1. 17.

발 의 자: 맹성규·강득구·권인숙

김영호 · 서삼석 · 소병철

송옥주 · 신정훈 · 안규백

양이원영 · 이성만 · 한준호

홍정민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령화, 핵가족화, 1인 가구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의 영향으로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반려동물용사료의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,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식품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에 위해사료 등의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(안 제24조의2 신설), 사료 판매업자에 거짓 및 과장 표시를 하지 않도록 사료의 표시사항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(안 제13조제1항 및 2항).

현행법의 과징금 상한액인 1천만원은 식품업계의 1% 수준으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, 과징금 상한액을 영업자의 영업이의 규모에 맞는 1억원으로 상향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

는 것임(안 제26조제1항).

##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제조업 등록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.

- 1. 제조시설이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
- 2.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
- 3.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가 제조업을 등록하려 는 경우
- 4.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
- 5.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가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
- 6. 등록을 하려는 자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가 이 법을

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
- 7. 등록을 하려는 자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경우
- 8. 등록을 하려는 자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- 제8조의3(제조업의 직권 등록말소) ① 시·도지사는 제조업자(제8조제 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) 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.
  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"을 "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"를 "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"로 한다. 제16조제5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

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"을 "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"으로, "포함한다)에게"를 "포함한다)는"으로, "기술·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"를 "기술·정보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위해사료의 공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4조제2호에 해당하여 사료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사료에 대해 제24조에 따른 회수·폐기 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2호"를 "제2호, 제4호의2"로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8의2. 제24조의2에 따른 위해사료의 공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 우

제26조제1항 본문 중 "1천만원"을 "1억원"으로 한다.

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3(실적보고) ① 제조업자는 연 1회 이상 생산량, 생산액, 국내외 판매현황 등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조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른 사료관리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제7호 중 "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"를 "사료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의2. 제24조의2에 따른 위해사료의 공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.
- 7.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제조업 등록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

법 시행 이후 제조업 등록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- 제3조(위해사료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가 제21조에 따른 사료검 사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제1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가 제 21조에 따른 사료검사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과징금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6조(실적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조하는 사료부터 적용한다.
- 제7조(과태료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2(제조업 등록의 제한)
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
	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
	<u>다.</u>
	1. 제조시설이 제8조제2항 본
	문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
	아니한 경우
	2.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
	의 등록이 취소된 후 6개월
	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
	서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
	<u> </u>
	<u>3.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</u>
	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
	지나지 아니한 자(법인인 경
	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가
	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
	4.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
	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
	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
	은 장소에서 제조업을 등록
	하고자 하는 경우
	<u>5.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</u>

- 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가 제조업을 등록하 고자 하는 경우
- 6. 등록을 하려는 자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가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- 7. 등록을 하려는 자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가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경우
- 8. 등록을 하려는 자(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
제8조의3(제조업의 직권 등록말 소) ① 시·도지사는 제조업자

<신 설>

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 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 분등록을 한 사항, 그 밖의 사 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 시하여야 하다.

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

(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) 가 「부가가치 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 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직권 으로 말소할 수 있다.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 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제13조(사료의 표시사항) ① 제 제13조(사료의 표시사항) ① 제 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| ②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 매업자-----

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 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16조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 저
  - ① ~ ④ (생 략)
  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(종업원을 포함 한다)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・정보를 제공하거 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 다.
  - ⑥ (생략)
  -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 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~ 3. (생략)

<u>.</u>
제16조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
<u>포함한다)는</u>
- <u>기술·정보에 관한 농림축산</u>
식품부렁으로 정하는 교육훈련
을 받아야 한다.
⑥ (현행과 같음)
⑦
<b>.</b>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4.·5. (생략) ⑧ ~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

	3의2.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	]
	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	
	4.•5. (현행과 같음)	
	⑧ ∼ ⑪ (현행과 같음)	
제	24조의2(위해사료의 공표) ①	)
	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	
	도지사는 제24조제2호에 해당	}-
	<u>하여 사료의 제조업자·수입업</u>	]
	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시	}
	료를 회수 또는 폐기할 것을	) <u>I</u>
	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료어	
	대해 제24조에 따른 회수·폐기	]
	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	ŗ L
	를 명하여야 한다.	
	② 제1항에 따른 공표내용 및	]
	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형	<u>}</u>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제	25조(제조업의 등록취소 등	)
	①	_
		_
		_
		-
		-
		-
	제2호, 제	4

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 략)

5. ~ 18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19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6조(과징금처분) ① 시·도지 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제 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 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 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 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.

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1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
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
<u>는 경우</u>
5. ~ 18. (현행과 같음)
18의2. 제24조의2에 따른 위해
사료의 공표 명령에 따르지
아니한 경우
19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6조(과징금처분) ①
<u>1억원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7조의3(실적보고) ① 제조업
자는 연 1회 이상 생산량, 생

- 1. ~ 6. (생략)

8. ~ 13. (생 략) <신 설>

산액, 국내외 판매현황 등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제조업자는 제27 조의2에 따른 사료관리정보시 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으로 보고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사료-----8. ~ 13. (현행과 같음) 13의2. 제24조의2에 따른 위해 사료의 공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. · 15. (현행과 같음)

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1. ∼ 4. (생 략)

<신 설>

② (생략)

-----

---.

- 1.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자.
- 2. ~ 6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
- 7.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
- ② (현행과 같음)